

201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본 승인안은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2016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개요

가. 세입결산

- 세입징수결정액은 422만 2,5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21만 4천원이며, 미수납액은 8,570원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7억 507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1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392만원임.

3. 세부내역

가. 세입결산

- 세입예산은 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편성되지 않았으며, 현액 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22만원이고, 그 중 실제수납액은 42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만원임.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원)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A)	실제수납액(B)	미수납액	비율(B/A)
합계		4,222,570	4,214,000	8,570	99.8%
일반회계		4,222,570	4,214,000	8,570	99.8%
세외수입		4,222,570	4,214,000	8,570	99.8%
임시적세외수입		4,222,570	4,214,000	8,570	99.8%
특별회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7억 507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1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392만원임.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총 계	1,705,069	1,611,144	93,925	94.5%
사업비	1,490,768	1,439,440	51,328	96.5%
보도기획 기능 강화	884,448	884,414	34	99.9%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63,554	463,530	24	99.9%
시장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20,894	420,884	10	99.9%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606,320	555,026	51,294	91.5%
방송모니터실 운영	93,247	88,763	4,484	95.2%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79,813	69,807	10,006	87.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284	94,335	2,949	96.9%
출입기자실 운영	135,976	108,121	27,855	79.5%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200,000	194,000	6,000	97.0%
행정운영경비	214,301	171,704	42,597	80.1%
기본경비	214,301	171,704	42,597	80.1%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예산이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전용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이체 : 해당사항 없음.
- 예산변경사용 : 총 1건, 102만원

<예산변경사용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예산액	감액	증액
예산변경사용	1건	391,734	1,017	1,017

라.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 : 해당사항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사고·명시이월) : 해당사항 없음.

바. 집행잔액

- 집행잔액 : 9,392만원(예산현액 대비 5.5%)

4. 검토의견

가. 세입결산

-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0원이었으나 42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그 중 99.8%인 421만원을 수납하였음. 이는 방송차량을 신규로 구입(3천1백만원)함에 따라 기존차량을 공개매각하여 발생한 매각대금을 수납한 것임.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에 의하여 최단주행거리 12만km 이상이고 내용연한 7년이상 차량은 교체가 가능함에 따라 취재지원용 방송차량 교체구입 비용으로 3천1백만원을 신규편성하여 방송차량을 교체하였고, 기존차량을 공개매각하여 생긴 매각대금을 수납함.

미수납액 1만원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 적용이 배제되는 전출자(해외파견)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추가 사용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반납청구된 금액이 정산되지 않은 것에 따른것임.

나. 세출결산

- 세출예산현액은 17억 507만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11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5.5%인 9,39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3.8%)에 비해 1.7%p 증가하였으며, 서울시 일반회계 집행잔액 비율(2.3%)에 비해 3.2%p가 높음.

<최근 3년 세출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잔액	집행률(B/A)
2015년	1,705,069	1,611,144	93,924	94.5%
2014년	1,631,105	1,569,328	61,777	96.2%
2013년	1,745,830	1,663,644	82,186	95.3%

- 집행잔액(9,392만원)은 사업비의 경우 불용율이 3.5%에 불과하지만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불용율이 19.9%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따른 것으로서 예산현액은 6,580만원에 집행액은 2,659만원에 불과하여 불용율이 59.6%에 달하기 때문임.

<사업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사업비	1,490,768	1,439,440	51,328	96.5%
보도기획 기능 강화	884,448	884,414	34	99.9%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463,554	463,530	24	99.9%
시정관련 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20,894	420,884	10	99.9%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606,320	555,026	51,294	91.5%
방송모니터실 운영	93,247	88,763	4,484	95.2%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79,813	69,807	10,006	87.5%
보도방송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284	94,335	2,949	96.9%
출입기자실 운영	135,976	108,121	27,855	79.5%
해외미디어 취재 지원	200,000	194,000	6,000	97.0%

<행정운영경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행정운영경비	214,301	171,704	42,597	80.1%
기본경비	214,301	171,704	42,597	80.1%

-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의 최근 4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44.7%, 2013년 76.3%, 2014년 51.3%, 2015년 40.4%로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기본경비” 예산 세부집행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내역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무관리비	급량비, 인쇄비 및 유인물제작비, 물품구입비 및 수리 등	124,005	123,962	43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6,156	6,053	103
국내여비	국내여비	65,800	26,588	39,212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급(1명), 4급(1명)	13,120	9,882	3,23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220	5,220	0
계		214,301	171,704	42,597

<최근 4년 국내여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5년	65,800	65,800	26,588	39,212	40.4%
2014년	65,800	65,800	33,742	32,058	51.3%
2013년	71,400	49,400	37,713	11,687	76.3%
2012년	70,000	70,000	31,284	38,716	44.7%

이는 2015년 메르스의 확산, 2014년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저조하게 집행되었다고는 하나 2013년과 2012년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어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16년 예산에는 2,632만원을 감액하여 3,948만원 편성함.

- “출입기자실 운영”에는 기자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출입기자단 행사운영비, 그리고 공무국외여비 등이 지출되는 바, 행사운영비의 집행률은 57.7%, 국외업무여비의 집행률은 65.6%로 다른 통계목에 비해 다소 저조한데,

이는 행사운영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2015.1.22)’이 개정됨에 따라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파악됨. 16년 예산에는 이 점을 반영하여 1천5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됨.

<“출입기자실 운영” 세부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사무관리비	39,996	39,956	40	99.9%
행사운영비	25,000	14,414	10,586	57.7%
국외업무여비	50,000	32,808	17,192	65.6%
시책업무추진비	16,480	16,478	2	99.9%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	4,466	34	99.2%
계	135,976	108,121	27,855	79.5%

국외업무여비는 연도별로 서울시 대표단의 해외순방 목적, 횟수, 지역, 기간, 그리고 동행 취재기자수 등에 따라 편차가 심해서 정

밀한 예산 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지만, 2013년도의 경우에도
 배정된 예산의 23.5%만 집행하여 76.5%를 불용하였고, 2014년의
 경우 92.4% 집행하였으나, 2015년은 상반기 메르스 여파로 해외
 출장이 저조하여 집행율이 65.6%에 그침. 예산 편성시 가급적 다
 음연도 여건 등을 고려해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3년 국외업무여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15년	50,000	32,808	17,192	65.6%
2014년	50,000	46,201	3,799	92.4%
2013년	60,000	14,098	45,902	23.5%

<최근 3년 해외순방 취재지원 내역>

(단위: 천원)

	출장일자	출장지	출장인원	출장비
2015년	2.1~2.6	일본	5명	9,465
	8.2~8.6	중국	4명	8,488
	9.20~9.23	몽골	4명	3,849
	11.1~11.4	중국	3명	2,585
	12.3~12.7	프랑스	3명	8,421
	소계			19명
2014년	4.3	중국	4명	3,540
	8.10 ~ 8.14	독일, 덴마크	2명	9,306
	9.21 ~ 9.30	미국	4명	22,840
	11.3 ~ 11.8	중국	5명	10,515
	소계			15명
2013년	2.17 ~ 2.21	UAE	2명	4,828
	4.21 ~ 4.23	중국	4명	4,616
	8.11 ~ 8.14	필리핀	4명	4,654
	소계			10명

-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의 경우, 전문대행사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예산 2억원 중 대행사의 청구에 의하여 외신홍보비, 취재지원비, 기자간담회비용 등을 정산·지급함. 2014년의 경우 낙찰차액 6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9천4백만원에 대해서 100%집행된바 있음.

2015년의 경우 일반 경쟁입찰 시 유찰되어 입찰참가자 1개社와 수의계약으로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함에 따라 6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세부 집행내역>

(단위: 천원)

회 차	기 간	내 용	집행액(천원)
총 계			194,000
1차	소 계		38,422
	2015.3.20.~2015.5.31	외신홍보	34,873
	2015.5.28	프레스투어-서울주재 중국언론	3,549
2차	소 계		50,799
	2015.6.1.~2015.8.31	외신홍보	47,169
	2015.6월	SFCC회원수첩 광고	3,630
3차	소 계		39,814
	2015.9.1~2015.10.31	외신홍보	39,814
4차	소 계		64,965
	2015.11.1~2015.12.31	외신홍보	58,266
	2015.11.24	프레스투어	6,699

- “시책업무추진비” 는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 월별 지출이 가장 많은 달(2월)의 상세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기자 간담회 등 업무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심야(23시 이후)에 사용하거나 상호명이 호프집 등인 경우가 있어 보다 신중한 사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특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2016.9.28.)을 앞두고 있고 공무원·언론인 등에게 허용되는 기준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인 만큼 외부 언론인과의 접촉이 많은 대변인은 보다 투명한 집행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

<2015년 시책업무추진비 월별 지출내역>

(단위: 원)

월별	집행액	월별	집행액
1월	25,774,310	7월	15,990,940
2월	27,390,400	8월	15,597,800
3월	16,902,680	9월	11,719,187
4월	21,675,440	10월	13,458,197
5월	18,820,140	11월	10,398,780
6월	12,979,350	12월	11,257,850
예산액		172,000,000	
재배정액		30,000,000	
총예산액		202,000,000	
집행총계		201,965,074	
집행잔액		34,926	

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 2015 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출결산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음.
- 변경사용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서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지원하는 특정 업무경비 현원(50명→51명)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분 지금을 위해 사무관리비 102만원을 변경사용함.

라.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2015회계연도 대변인 소관 세입금 이월액은 총1건으로 8,570원임. 이는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선택적 복지포인트 적용이 배제되는 전출자(해외파견)의 선택적 복지포인트 추가 사용분에 대해 일할 계산되어 반납청구된 금액이 정산되지 않은 것에 따른것임.

〈붙임1〉 대변인실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붙임2〉 2015년도 해외언론 홍보 대행사 선정 관련

〈붙임1〉 대변인실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예산 변경 계획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사업에 편성된 ‘특정업무경비’가 인사이동 등 인원변동으로 인하여 부족분이 발생함에 따라, 동일 사업의 사무관리비 일부를 예산 변경하여 원활한 언론행정을 운영코자 함

I 변경 사유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특정업무경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예정액 (12월)	부족분 (편성액 기준)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특정업무경비 (204-03)	60,000 (100,000원×50명×12월)	55,917	5,100	1,017

인사이동 등 인원변동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

- 인사이동 등 인원변동으로 특정업무경비 지급 부족분 발생
 - 예산 편성액 : 100,000원×50명×12월 = 60,000천원
 - 1월~11월 집행 금액 : 55,917천원
 - 12월 지급 예정액 : 5,100천원 (지급인원 51명)

변경 요청액 : 총 1,017천원

- 산출근거 : 지출예정총액(55,917천원+5,100천원)-예산편성액(60,000천원)=1,017천원

※ 월별 지급 인원 및 금액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
인원 (명)	59	51	51	51	51	51	51	51	51	50	51	-
금액 (천원)	4,971	5,100	5,100	5,100	5,100	5,100	5,151	5,100	5,043	4,948	5,204	55,917

II 예산 변경 계획

변경 금액 : 1,017천원

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정한 보도체계 확립	보도기획 기능강화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대화채널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31,734		△1,017	330,717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60,000	1,017		61,017

〈붙임2〉 2015년도 해외언론 홍보 대행사 선정 관련

□ 2015년도 해외언론 홍보 대행사 선정 관련

○ 2015년도 해외언론 홍보 대행사 선정 과정

- '15.1.19 ~ 2.10 (1차공고)
⇒ 1개 업체 접수로 인해 유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근거 참가자격을 중소기업자로 한정함

- '15.2.11 ~ 2.23 (1차공고)
⇒ 1개 업체 접수로 인해 유찰

▶참가자격에 대한 '중소기업자 한정' 제한이 없어져 공고내용이 달라짐에 따라 1차에 대한 재공고가 아닌 새로운 공고로 간주

- '15.2.25 ~ 3.10 (2차 재공고)
⇒ 1개 업체 접수로 인해 유찰 ⇒ 수의계약 체결 ('15.3.20~'15.12.31)

○ 2015년도 대행사 선정근거

〈〈 관련근거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법률 제9685호, 2009.5.21) 제9조(계약의 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4860호,2013.11.20)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제1항 제5호(문화산업 진흥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안행정부예규 제34호, 2013.11.23) 제5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선정절차

